

## 4.23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유린 헌법유린 규탄 기자회견

“4.23 폭력침탈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광화문)

○ 주최 :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 사회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주요발언 및 프로그램

발언1\_4.23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폭력사태의 전말 보고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발언2\_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발언(1) (정지윤, 화성  
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발언3\_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발언(2) (이일, 난민인  
권네트워크)

발언4\_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발언(3) (자캐오, 이주  
노동자평등연대)

발언5\_연대발언 (1)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발언6\_연대발언 (2) (이환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낭독\_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도승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공동주최: 4.23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폭력침탈 및 강제  
송환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법침: 법무부 보도자료(2025. 4. 25.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에 대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입장문**

## [발언1] 4.23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폭력사태의 전말 보고

심아정(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를 비롯한 미등록이주인을 줄줄이 '강제송환'하기에 급급합니다. 법이 바뀌면 무조건적으로 당장 풀어야 할 장기구금자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추방'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은 4월 18일 금요일 오후, 스무 명의 보호소 직원들이 달려들어 나이지리아 국적의 V를 제압해서 끌고나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중 활동가들은 출입국 정책 본부와 보호소에 돌아가며 전화를 돌렸습니다. V의 안위를 물었을 때, 출입국은 보호소 소관이니 "모른다"고 하고, 보호소는 담당 직원이 다 퇴근해서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는 보호소와 출입국 모두 문을 닫으니 금요일 오후에 강제송환을 집행해 버리면, 손을 쓸 수도 없고, 안부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V가 이미 인천공항으로 가는 호송버스에 태워져 한 시간 전에 떠났다고, V는 끌려 나가면서도 격렬히 저항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음 차례는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떨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난민재신청을 앞두고 있던 V는 느닷없이 달려든 보호소 직원들에게 머리보호대와 두 개의 수갑이 채워지고, 두 무릎을 밧줄로 묶인 채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끌려갔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고지 받지도 않았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V에게 "Against your will?"(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입니까?)라고 거듭 물으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준 덕분에 강제송환은 무산되었습니다만, 보호소에 돌아온 그는 '지시불응'이라는 이유로 사흘을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네에, 맞습니다, 2021년에 '새우껍기' 고문이 자행되었던 바로 그 '독방'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참담함 속에서 우리는 4월 23일 강제송환 규탄집회를 급히 잡았습니다. 집회 전날, 보호소 쪽에 송환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파악되는 것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엔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들의 연대발언 도중에, 버젓이 강제송환을 위해 인천으로 향하는 호송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집회는 호송버스 저지를 위해 기획되지 않았습니다. 집회 후에 함께 갈 식당도 예약해 둔 상태였으니까요. 돌발상황을 초래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도발한 것은 다른 아닌 법무부/출입국/외국인보호소입니다. 우리가 보호소 정문 앞에서 온몸으로 송환버스를 막아서려했던 이

유는, 강제송환을 당하는 미등록이주민들에게 보호소 정문은 다른 아닌 '국경'이며, 강제송환은 다른 아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호소 정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방'을 향한 관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명의 활동가가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져 체포되는 이례적인 강경대처와 함께, 경찰과 형사들은 송환버스를 저지하려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내동댕이쳤고, 그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다쳤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소 내에서 활동하는 출입국공무원 IRPT(외국인보호소 기동대)가 경찰과 함께 동원되고, 낯익은 보호소 직원들이 정문 앞에 '인간방패'로 세워졌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출입국공무원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시민들의 집회를 강경 진압한 법무부에게 묻습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른 아닌 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무법지대를 만들고 평화로웠던 집회를 야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외국인보호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소식을 듣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 제대로 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이들은 20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한 예외 사례에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 소송 중인 이들이 포함된 것을 두려워하며 난민재신청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난민신청 그 자체로 추방의 위협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후 심사받을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들의 뒷통수를 친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강제송환을 둘러싸고 4월 23일에 발생한 폭력적인 집회 진압에 대해 4월 25일 법무부가 내 놓은 보도자료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호송버스 안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은 난민신청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왜 필요합니까? 난민신청자였어도 재신청을 하는 '중'이 아니거나 임금 체불 등 다른 사유로 구금된 사람들은 강제송환 되어도 당연하다는 소리입니까? 어느 누구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렇게 졸속으로 강제송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지금도 전국의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된 채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미 송환되어 안부를 물을 수 없게 된 사람들과 연결되어 법무부의 강제송환 시도와 집회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 [발언2] 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 (1)

정지윤(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자들을 면회하고 있는 마중의 정지윤입니다. 저는 햇수로 이제 9년째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비국민들을 면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소라는 이름의 수용소에서 구금자들에게 행해진 인권침해와 폭력을 전해 듣고 목도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그동안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폭력이 보호소 밖으로 흘러넘쳐 인권과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호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이 그날 모여든 연대자들에게도 서슴없이 행해졌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장기구금자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출입국, 외국인보호소가 2년, 3년 심지어 5년 가까이 가뒤통던 이들입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한계가 많지만, 그나마도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일차적 대상이 장기구금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저마다의 사유가 있습니다. 난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자만 난민신청자라고요? 한국의 난민인정률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소립니다. 한국에 돌아야 할 가족이 있는 이들까지 쫓아내고 한국에서 유아동기부터 자라나 한국이 고향과 다름없는 이들도 쫓아냅니다. 강제퇴거시켜버릴지언정 외국인보호소 밖으로 한 발짝도 내보낼 수 없다는 듯 주구장창 가뒤통던 이들, 그런데 막상 이들이 구금이 길어지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 치료조차 해주지 않고 보호소 밖으로 내 쫓고져어버리는 모습을 슬하게 봤습니다. 법 개정을 앞두고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퇴거집행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보호소가 지금까지 대책없이 가뒤통던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려니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벌이는 작태 아닙니까?

지난 4월 23일의 평화로운 집회 현장에서 세 번이나 차를 내보냈다 들여보냈다 하며 우롱하듯 집회 참가자들을 도발한 것은 누구입니까? Y씨와 같은 방을 쓰던 외국인은 직원들이 그의 짐을 싸고 있다며 불안에 떨며 전화했습니다. 바로 전날 Y씨로부터 퇴거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보호소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했을 때, 한참을 뜬 뜬 들여 알아보고서는 지금 명단에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구금자의 강제퇴거를 하루 전날까지 정말 몰랐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퇴거 사실을 문의한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의도된 기만입니다. 비행기표도 끊고 호송 차량도 준비하고 계호 인력도 배치를 끝냈을 시간에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고, 집회 도중에 호송 차량을 밀고 나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 집행입니까?

그리고,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집회 현장으로 밀고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섰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호소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자신들의 근무지인 보호소 밖으로 뛰쳐나와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평화로운 집 회 참가자들을 겁박한 것은 보호소 직원들과 기동대원들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는 그동안 외부병원 진료도,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해오던 토요일 면회도, 구금자들이 담당 매니저 면담을 한번 하려 해도 계호할 사람이 없다, 업무가 과중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며 미루더니 구금자들을 묶고 끌고 가고 내쫓을 때 에는 수십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소 밖으로까지 뛰쳐나와 평화롭게 집회하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내고 내팽개치는 데에는 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찰은 그들을 막아서야 했습니다. 그들을 보호소 안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보호소 측은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원 수십 명을 내보내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이나 입장을 밝히려는 요구에는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서한 까지 전달했지만 누구 하나 나와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순간 누구를, 무엇을 지키고 보호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동안 구금자들에게 들은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아프다고 호소해도, 면담이 필요하다고 요구해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 어서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표현하면 난동이라며 제압하고 독방에 가두었던 그 행 태가 그대로 보호소 밖에서도 행해진 것입니다.

4월 23일 결박당한 단 세 명을 태운 호송 차량은 수십 명의 경찰과 보호소 직원 과 기동대의 '보호' 속에 공항으로 떠났고 대한민국이 이제껏 수년씩 가두어두었던 장기구금자들은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세 명을 내보내기 위해 수십 명에게 폭 력이 행해졌습니다. 장기구금의 피해자,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일 먼저 풀려줘야 할 이들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보호소는 이 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 침탈 후에도 치욕스러움과 벌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금자들을 면회했습니다. 구금자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강제되거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구 금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안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민감한 상황을 불러일으켜 소위 말하는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자들 이 누구입니까? 이따위 외국인보호소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장기구금자에게 심사 기회를 주라, 법개정 전까지 강제 송환을 일체 중단하라는 요구를 넘어,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 니다.

보호 없는 외국인보호소, 지금 당장 폐쇄하라! 투쟁!

### [발언3] 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 (2)

#### - 반성하지 않는, 정당한 법집행이란 말의 허구

이 일(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를 다니고, 전국의 보호실을 다니며 억울한 처지에 놓인 난민들을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보호소에서 나올수도 없는 상황. 우리들은 어디론가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과 평화를 담보할 고향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난민분들이 보호소에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왜 안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든, 내전이든, 보복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고향과의 끈이 끊어진 사람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나올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움짱달짱할 수 없게 국가의 경계속, 개인들이 처한 고통과 삶의 다양한 말들은 '왜 안돌아가지?'라는 황당한 질문 속에 묻혀집니다. 지중해의 난민선을 타고 사망한 사람들의 뉴스를 보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난민선을 안타면 되는거 아니야? 왜 그런걸 탔지?'

정당한 법집행이란 말, 법적 제한 사유가 없다는 말, 난민인정자가 아니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집행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는 말. 이렇게 무책임하고 진절머리나는 말이 없습니다. 실패한 비호제도와 국가간의 더 높은 장벽, 외국인들을 한국사회의 곤경을 전가하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한국의 출입국제도의 문제 속 개인들이 처한 삶과 죽음의 문제들은 어느새 정당한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부당한 이유로 여겨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공권력의 행위는 그안에서 모두 정당한 것입니까? 퇴거명령서가 있으니 사람들을 결박하여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모두 정의로운 것입니까? 전쟁법을 형식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은 전투행위속 살상은 모두 정의로운 것입니까? 결국 이 모든 과정 속 고통은 감수해야할 부수적 손해에 불과합니까?

추상적인 출입국관리의 공익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삶의 이유를, 짧게는 몇달간 길게는 몇년간 움짱달씩 할 수 없이 보호소와 보호실의 작은 방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그간의 고통을 청취하지 않은 채, 집행을 저해하는 사유라고만 판단하고, 왜 돌아가지 않냐고 묻는말. 그것은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 있는 서사로 듣지 않는 것, 사람을 치워버려도 되는 사

물로 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확인한 최소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구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방을 위해 사람들을 마냥 '왜 돌아가지 않냐고' 추궁했던 것이, 사람을 치워버려도 되는 사물로 봤던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역사상 반성이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학살에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사과하지 않고 단지 유감을 표명한다고 넘어가는 정치인들. 국가폭력에 대해 반복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패소 후에도 항소를 하는 국가기관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따르고 싶지 않아, 석방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의 자의적인 구금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한이 만료될 무렵에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결국 난민들의 자유에 대한 한국헌법상의 요청을 출입국공무원들이 임의로 제한하고 기망하는 것입니다. 난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서사들과 고통을 쓰레기처럼, 부수적 손해처럼, 법집행을 제한하는 생떼처럼 이해하고 지워버리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앞에서 당당한 국가권력, 그 앞에 연대한 사람들의 호소를 비웃은 이번 4.23 사건을 평화와 안전을 찾아 정당한 권리를 외쳐온 난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 [발언4] 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 (3)

자캐오(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이주민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교 성서의 정경과 외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루가 6:31)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마라.”(토비트 4:15a)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종교와 사상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이라, 우리는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황금률을 통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새삼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이 땅의 경찰과 법무부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은 물론, 그 이주민 식구들과 적극 동행하려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경찰과 법무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제 신청 중이던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주민들에 대한 강압적 구금과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되는 한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강제 추방 절차와 이송을 밀어붙였습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던 참여자들은 법무부와 경찰의 모욕과 자극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날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적 해산과 강제 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남편인 이주 노동자를, 이 땅에 남겨진 가족과 제대로 된 이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강제 추방한 법무부와 경찰이, 이 땅의 수많은 이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국제 인권 규범에도 맞지 않은 왜곡된 법 집행을 막아선 사회 구성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강제 연행하는 경찰과 법무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이주민들을 노예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라는 공장이 돌아가는데 싼값으로 맘껏 사용하다가 쉽게 폐기처분할 수 있는 부품과 같은 노예로 여기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4월 23일, 이주민 식구들에 대한 강압적 구금과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되는 한가운데에서 그 따위 도발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한국 법무부와 경찰이 이주민 식구들을 '존엄한 한 사람이자 사회 구성원인 식구'로 생각했다면, 이주민 식구들을 존엄한 한 사람이자 동등하며 고유한 식구로 여기며 말하고 행동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법무부와 경찰은 이주민 식구들을 이 사회의 싼 부품 같은 노예로 여겼기에, 것처럼 무례하고 폭력적이며 일방적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이주민 식구들은 물론,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와 관계를 위해 이주민 식구들의 체류권과 노동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노예나 사회 안정을 해치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는 법무부와 경찰은 하루속히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 맞는 제대로 된 국가의 법무부와 경찰,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데 헌신하는 국가기관으로 탈바꿈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만 세 번 반복해 주십시오.

“이주민은 노예가 아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주민 식구들의 존엄하고 평등한 인권을 존중하라!”

“왜곡된 법 집행을 반복하고 변명만 일삼는 법무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반성하라!”

## [발언5] 연대발언 (1)

박희은(경기이주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박희은입니다.

곧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한국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에 의해 지난 4월 23일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고, 강제송환의 과정은 잔인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반인륜적, 국제법을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당사자는 2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호라는 명분으로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고, 무기한 구금은 2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인권 보장의 방향이 아닌 그동안 지속하였던 폭력적, 반인권적 강제추방이 여전히 한국 정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3일, 화성 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평화롭던 집회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 역시 법무부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무리한 강제송환 집행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성서부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을 포함한 사복을 입은 다수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적법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수많은 참가자가 질질 끌려다니고, 패대기가 쳐지는 상황이었으며 오직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위해 법무부에 충성하는 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며, 그들의 폭력적인 태도를 경험하며, 그동안 화성보호소 내에 구금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얼마나 반인권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일삼던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광장에서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세상은 모두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처한 현실은 일상이 계엄인 상황에서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자 동시에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의 확장, 그것을 통한 질적 변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막아서는 자들은 차별과 폭력을 일상화하며 혐오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내의 인권실태가 어떠한지 화성 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일명 '새우 꺾기' 고문의 실상

이 세상에 폭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장기간 구금되어 제대로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미성년자, 아동이 구금되고 있는 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 법무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정당당하다면, 폭력을 동반한 행태가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과 연결하고자 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금시설의 목적과 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기하는 것은 이 사회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활동입니다.

우리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이주노동자와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구금된 외국인보호소의 실상을 세상에 끈질기게 폭로하고, 그들과 연결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법무부의 강제단속, 강제구금, 강제추방에 반대하며 정책의 질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4월 23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폭력과 인권유린, 탄압에 함께 항의하고 규탄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폭력을 동반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광장에서 함께 평등사회를 외친 이유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세상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 [발언6] 연대발언 (2)

이환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본국의 박해를 피해 홀로 한국에 왔다가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아동에 대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어린이, 장애인 등을 가리지 않고 강제 퇴거 대상이면 재판도, 영장도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의 이주 구금 제도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라는 의미는 위헌이지만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의미일 뿐 위헌이라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계기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2025. 6. 1.)을 앞두고 법무부는 위헌 결정 취지에 맞는 보호제도 운영에 나서기는 커녕 장기 구금된 외국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국외 호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위헌적 공권력행사입니다. 법무부는 심지어 난민신청자나 미성년자녀가 있어 구제제도 절차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외국인조차 국외 호송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행정편의만을 내세워 인권침해를 태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위헌적 강제송환 움직임에 대하여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평화로운 항의 집회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회장소 앞에는 강제 송환되는 피구금 외국인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즉각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시민단체활동가들을 자극하여 충돌을 유발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헌적 강제송환 시도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일부 충돌이 발생하여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서부경찰서는 집회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이 위헌적 강제송환 시도에 협조하여 시민단체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연행하였습니다.

4.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강제 송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구금 외국인에 대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제송환절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위헌, 위법한 강제송환 시도와 폭

력적 강제진압에 나선 법무부와 경찰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 [발언7] 향후 대응방향

김대권(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 [공동성명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침탈 및 강제 송환 강행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4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화성서부경찰서와,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강제 송환을 강행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일 집회는 강제 송환되는 피구금 외국인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정문을 통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강제송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는 와중에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될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집회 참가자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화성서부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 보다는 호송버스의 정문 통과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해산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산 과정에서 남성 경찰이 여성 참가자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는가 하면, 내국인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없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외부 용역 직원까지 동원된 것은 공권력 남용의 심각한 사례이다.

이미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구금중이던 외국인 V씨를 지난 19일 강제 송환하려다가 항공사 직원의 반대로 실패하였는데 V씨는 난민신청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였다. 그리고 23일에 호송버스에 실어 강제송환시킨 외국인 2명 중 한명은 국내에 초등학교 입학한 미성년자녀가 있어 구제제도 절차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다른 한명 역시 국내 미성년자녀가 있고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국외 호송이 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처사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확인되었으며, 단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다. 5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위헌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통틀어 단 2건에 불과했던 국외 호송 방식의 강제 송환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확인된 것만 벌써 3차례 이상 강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외 호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장기 구금된 외국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명백히 왜곡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화성서부경찰서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행한 폭력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법무부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강제 송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개정법 시행까지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라!
3. 법무부는 장기 구금 외국인에 대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인권 침해적인 강제 송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4.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헌적인 강제 송환 정책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 4.23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폭력침탈 및 강제 송환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강북구노동인권네트워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경기녹색당,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총경기도본부/민주노동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옴,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도봉지역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큐공동체상영시민모임, 대경이주연대회의, 무지개행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누구나노조지회,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별이분법



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 E,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시주노동 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시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 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 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 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 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 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 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플랫폼C, (가)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 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 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 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 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 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 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HIV/AIDS인권행동 알 개인 : 김선혜, 김희식,윤숙희, 이지창, 배영화, 홍지연, 박정아, 이정민, 윤일희

##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입장문

법무부는 2025. 4. 25.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구금 이주민을 보호해제 해야 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며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저질러 놓고 또 다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4월 18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 이주민에게 20여명의 인력이 달려들어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밧줄로 묶은 뒤 공항으로 호송하여, 목적지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송환을 시도하였다. 이 이주민은 공항으로 끌려가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저지하여 가까스로 강제송환을 면하였다. 송환시도가 실패하자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그가 지시를 불응했다며 그를 독방에 가두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경우 구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강제송환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4월 18일 이루어진 송환시도는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송환시도 행위였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의 다른 이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환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 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난민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4월 23일에는 한 미등록이주민이 한국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둔 채로 강제퇴거가 집행되었다. 그의 미성년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제도 절차를 신청하여 기다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집행정지신청도 했다고 한다. 출입국은 행정심판 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려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묵살하고 그를 호송차량에 태웠다. 그는 결국 강제송환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무리한 출국의 종용과 강제퇴거 집행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 돌아갈 수 없다며 저항하는 이주민을 출입국이 무리하게 추방시키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추방된 이주민이 본국에서 실종되거나 구금되는 사례들도 있다. 5년, 10년 오랜시간 입국규제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다시 가족을 만나러 오기 위해 한국정부에 입국허가를 구해도 정확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강제퇴거 집행이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도 신속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송환의 현장에서 온 몸으로 막아내는 것 외에는 위법한 집행을 저지할 방도가 없다.

지난 4월 23일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자행하는 강제송환을 규탄하기 위하여 집회를 열었다. 순서에 따라 정해진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치며 연대했다. 사전 집회신고 절차를 밟았으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당일 송환 계획이 없다고 확실하게 공식 회신을 받은 후에 진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출입국은 집회 현장 앞을 지나 송환을 감행했다.

활동가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 모여 무리하게 감행되고 있는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호송차량이 외국인보호소를 출발했다. 위법한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활동가들은 필사적으로 몸으로 버스를 막아서야 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권한도 없는 보호소의 직원들을 동원해 인간방패로 삼고, 활동가들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평화로운 집회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폭력을 사용했고 활동가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등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헌법불합치결정의 근본 취지는 장기구금 이주민의 인권/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이후 법무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하게 과도한 구금상한을 제시하였고, 구금통제기관을 법무부 내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여러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음에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국회토론회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강제단속으로 인한 여러 인권침해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 이주민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며 불법적인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단 하루도 감옥에서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지낸다는 건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 구금되었던 한 이주민이 한 말이다. 한국에 가족들이 남아있어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서, 본국이 안전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한국을 떠날 수 없고,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장기간의 구금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간 여러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무기한 구금하던 관행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오늘도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머리보호대, 수갑, 밧줄에 묶여 끌려나가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 추방을 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국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위헌적인 제도운명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장기구금 이주민들을 즉시 보호해제해야 한다.

2025. 4. 28.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